posco 포스코건설 | The Sharp 장암 더샵

# [장암 더샵] 입주자 모집공고

## 일반사항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아파트는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7.13.임.(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의정부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임.
- 본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된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3)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함.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 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함.
- 전매금지 및 재 당첨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7.08.02)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됨.
  - 재 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의 청약이 가능함.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 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7.13.)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가 속한 자 중 최저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당첨자에 대하여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보다 우선 배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 법」 제56조 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음.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본 공동주택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1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2015.12.29.)에 따라 입주자 선정 업무 중 동 · 호수 배정 업무는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함.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당 공동주택의 건축 관련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람 및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은 주택 청약제도 개편(2016.12.30.)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약방법의 변경이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7호의 각목
  -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즉, 지역(직장)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대상자는 각각 사업계획승인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됨(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2,3순위' 방식을→'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 기존 '2년, 24회 납입'→'1년, 12회 납입'으로 완화
  -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함.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재생과 – 4341호(2017.07.13.)」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4-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총 677세대(조합121세대, 임대34세대, 보류7세대) 중 일반분양 515세대
  [특별공급: 161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48세대, 다자녀특별공급: 5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48세대, 노부모특별공급: 15세대 포함)]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구분 |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합계 | 세대별 대지 지분(㎡) | 공급 세대수 합 계 | 특별공급 기관 추천 | 다자녀 | 신혼 부부 | 노부모 | 일반 공급 | 최하층 배정세대 | 해당 동 | 입주 예정 시기 |
|---|---|---|---|---|---|---|---|---|---|---|---|---|---|---|---|---|---|---|
| 민영주택 | 2017000851-01 | 25.1332 | 25 | 25.1332 | 12.0724 | 37.2056 | 15.8033 | 53.0089 | 16.2532 | 27 | 2 | 2 | 2 | 1 | 20 | – | 109(1,2,3,4호) | 2020년 01월 |
| | 2017000851-02 | 40.2595 | 40 | 40.2595 | 18.7086 | 58.9681 | 25.3145 | 84.2826 | 25.7601 | 51 | 5 | 5 | 5 | 2 | 34 | – | 109(5,6,7,8,9,10,11,12호) | |
| | 2017000851-03 | 59.4194 | 59 | 59.4194 | 17.1614 | 76.5808 | 37.3620 | 113.9428 | 33.4541 | 26 | 2 | 2 | 2 | 1 | 19 | 5 | 101(1호) 102(4호) 103(1호) 106(1호) 107(5호) | |
| | 2017000851-04 | 84.4994A | 84A | 84.4994 | 23.2398 | 107.7392 | 53.1318 | 160.8710 | 47.0656 | 258 | 25 | 25 | 25 | 5 | 178 | 16 | 101(3,4호) 102(1,2호) 103(2,3호) 104(1,2호) 105(1,2호) 106(2,3호) 107(1,2,3,4호) 108(1,2호) | |
| | 2017000851-05 | 84.8014B | 84B | 84.8014 | 23.5412 | 108.3426 | 53.3218 | 161.6644 | 47.3292 | 24 | 3 | 2 | 3 | 1 | 15 | 2 | 104(5호) 105(5호) | |
| | 2017000851-06 | 84.7338C | 84C | 84.7338 | 24.2805 | 109.0143 | 53.2792 | 162.2935 | 47.6226 | 65 | 7 | 7 | 7 | 1 | 43 | 2 | 104(4호) 105(3,4호) 106(4,5) | |
| | 2017000851-07 | 84.8802D | 84D | 84.8802 | 24.0571 | 108.9373 | 53.3713 | 162.3086 | 47.5890 | 15 | 2 | 2 | 2 | 1 | 8 | – | 103(5호) | |
| | 2017000851-08 | 84.7662E | 84E | 84.7662 | 24.5403 | 109.3065 | 53.2997 | 162.6062 | 47.7503 | 16 | 2 | 2 | 2 | 1 | 9 | 1 | 101(2호) | |
| | 2017000851-09 | 99.3324 | 99 | 99.3324 | 27.6050 | 126.9374 | 62.4586 | 189.3960 | 55.4523 | 33 | – | 3 | – | 2 | 28 | 3 | 102(3호) 103(4호) 104(3호) | |
| 합 계 | | | | | | | | | | 515 | 48 | 50 | 48 | 15 | 354 | 29 | – |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동호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합계 | 계약금(10%) 1차 계약시 | 2차 계약후 +1개월내 | 중도금(60%) 1회(15%) 2018.03.15 | 2회(15%) 2018.07.16 | 3회(10%) 2018.11.15 | 4회(10%) 2019.03.15 | 5회(10%) 2019.07.15 | 잔금 30% 입주시 |
|---|---|---|---|---|---|---|---|---|---|---|---|---|---|---|---|---|
| 25.1332 | 27 | 109동(1호~4호) | 10층 이상 | 8 | 36,675,730 | 91,114,270 | – | 127,790,000 | 10,000,000 | 2,779,000 | 19,168,500 | 19,168,500 | 12,779,000 | 12,779,000 | 12,779,000 | 38,337,000 |
| | | | 7~9층 | 12 | 35,949,620 | 89,310,380 | – | 125,260,000 | 10,000,000 | 2,526,000 | 18,789,000 | 18,789,000 | 12,526,000 | 12,526,000 | 12,526,000 | 37,578,000 |
| | | | 5~6층 | 7 | 35,223,510 | 87,506,490 | – | 122,730,000 | 10,000,000 | 2,273,000 | 18,409,500 | 18,409,500 | 12,273,000 | 12,273,000 | 12,273,000 | 36,819,000 |
| 40.2595 | 51 | 109동(5호~12호) | 10층 이상 | 14 | 57,385,650 | 142,564,350 | – | 199,950,000 | 10,000,000 | 9,995,000 | 29,992,500 | 29,992,500 | 19,995,000 | 19,995,000 | 19,995,000 | 59,985,000 |
| | | | 7~9층 | 23 | 56,249,130 | 139,740,870 | – | 195,990,000 | 10,000,000 | 9,599,000 | 29,398,500 | 29,398,500 | 19,599,000 | 19,599,000 | 19,599,000 | 58,797,000 |
| | | | 5~6층 | 14 | 55,112,610 | 136,917,390 | – | 192,030,000 | 10,000,000 | 9,203,000 | 28,804,500 | 28,804,500 | 19,203,000 | 19,203,000 | 19,203,000 | 57,609,000 |
| 59.4194 | 26 | 101동(1호)<br>102동(4호)<br>103동(1호)<br>106동(1호)<br>107동(5호) | 10층 이상 | 6 | 85,741,250 | 213,008,750 | – | 298,750,000 | 10,000,000 | 19,875,000 | 44,812,500 | 44,812,500 | 29,875,000 | 29,875,000 | 29,875,000 | 89,625,000 |
| | | | 7~9층 | 2 | 84,045,080 | 208,794,920 | – | 292,840,000 | 10,000,000 | 19,284,000 | 43,926,000 | 43,926,000 | 29,284,000 | 29,284,000 | 29,284,000 | 87,852,000 |
| | | | 4~6층 | 8 | 82,346,040 | 204,573,960 | – | 286,920,000 | 10,000,000 | 18,692,000 | 43,038,000 | 43,038,000 | 28,692,000 | 28,692,000 | 28,692,000 | 86,076,000 |
| | | | 3층 | 5 | 80,647,000 | 200,353,000 | – | 281,000,000 | 10,000,000 | 18,100,000 | 42,150,000 | 42,150,000 | 28,100,000 | 28,100,000 | 28,100,000 | 84,300,000 |
| | | | 2층 | 5 | 79,800,350 | 198,249,650 | – | 278,050,000 | 10,000,000 | 17,805,000 | 41,707,500 | 41,707,500 | 27,805,000 | 27,805,000 | 27,805,000 | 83,415,000 |
| 84.4994A | 258 | 101동(3,4호)<br>102동(1,2호)<br>103동(2,3호) | 10층 이상 | 41 | 111,186,670 | 276,223,330 | – | 387,410,000 | 10,000,000 | 28,741,000 | 58,111,500 | 58,111,500 | 38,741,000 | 38,741,000 | 38,741,000 | 116,223,000 |
| | | | 7~9층 | 18 | 108,985,380 | 270,754,620 | – | 379,740,000 | 10,000,000 | 27,974,000 | 56,961,000 | 56,961,000 | 37,974,000 | 37,974,000 | 37,974,000 | 113,922,000 |
| | | | 4~6층 | 18 | 106,784,090 | 265,285,910 | – | 372,070,000 | 10,000,000 | 27,207,000 | 55,810,500 | 55,810,500 | 37,207,000 | 37,207,000 | 37,207,000 | 111,621,000 |
| | | | 3층 | 6 | 104,582,800 | 259,817,200 | – | 364,400,000 | 10,000,000 | 26,440,000 | 54,660,000 | 54,660,000 | 36,440,000 | 36,440,000 | 36,440,000 | 109,320,000 |
| | | | 2층 | 6 | 103,480,720 | 257,079,280 | – | 360,560,000 | 10,000,000 | 26,056,000 | 54,084,000 | 54,084,000 | 36,056,000 | 36,056,000 | 36,056,000 | 108,168,000 |
| | | 104동(1,2호)<br>105동(1,2호)<br>106동(2,3호)<br>107동(1호~4호)<br>108동(1,2호) | 10층 이상 | 77 | 109,088,700 | 271,011,300 | – | 380,100,000 | 10,000,000 | 28,010,000 | 57,015,000 | 57,015,000 | 38,010,000 | 38,010,000 | 38,010,000 | 114,030,000 |
| | | | 7~9층 | 36 | 106,930,460 | 265,649,540 | – | 372,580,000 | 10,000,000 | 27,258,000 | 55,887,000 | 55,887,000 | 37,258,000 | 37,258,000 | 37,258,000 | 111,774,000 |
| | | | 4~6층 | 36 | 104,769,350 | 260,280,650 | – | 365,050,000 | 10,000,000 | 26,505,000 | 54,757,500 | 54,757,500 | 36,505,000 | 36,505,000 | 36,505,000 | 109,515,000 |
| | | | 3층 | 12 | 102,608,240 | 254,911,760 | – | 357,520,000 | 10,000,000 | 25,752,000 | 53,628,000 | 53,628,000 | 35,752,000 | 35,752,000 | 35,752,000 | 107,256,000 |
| | | | 2층 | 8 | 101,529,120 | 252,230,880 | – | 353,760,000 | 10,000,000 | 25,376,000 | 53,064,000 | 53,064,000 | 35,376,000 | 35,376,000 | 35,376,000 | 106,128,000 |
| 84.8014B | 24 | 104동(5호)<br>105동(5호) | 10층 이상 | 8 | 108,646,720 | 269,913,280 | – | 378,560,000 | 10,000,000 | 27,856,000 | 56,784,000 | 56,784,000 | 37,856,000 | 37,856,000 | 37,856,000 | 113,568,000 |
| | | | 7~9층 | 6 | 106,494,220 | 264,565,780 | – | 371,060,000 | 10,000,000 | 27,106,000 | 55,659,000 | 55,659,000 | 37,106,000 | 37,106,000 | 37,106,000 | 111,318,000 |
| | | | 4~6층 | 6 | 104,341,720 | 259,218,280 | – | 363,560,000 | 10,000,000 | 26,356,000 | 54,534,000 | 54,534,000 | 36,356,000 | 36,356,000 | 36,356,000 | 109,068,000 |
| | | | 3층 | 2 | 102,192,090 | 253,877,910 | – | 356,070,000 | 10,000,000 | 25,607,000 | 53,410,500 | 53,410,500 | 35,607,000 | 35,607,000 | 35,607,000 | 106,821,000 |
| | | | 2층 | 2 | 101,115,840 | 251,204,160 | – | 352,320,000 | 10,000,000 | 25,232,000 | 52,848,000 | 52,848,000 | 35,232,000 | 35,232,000 | 35,232,000 | 105,696,000 |
| 84.7338C | 16 | 104(4호) | 10층 이상 | 8 | 110,380,200 | 274,219,800 | – | 384,600,000 | 10,000,000 | 28,460,000 | 57,690,000 | 57,690,000 | 38,460,000 | 38,460,000 | 38,460,000 | 115,380,000 |
| | | | 7~9층 | 3 | 108,196,130 | 268,793,870 | – | 376,990,000 | 10,000,000 | 27,699,000 | 56,548,500 | 56,548,500 | 37,699,000 | 37,699,000 | 37,699,000 | 113,097,000 |
| | | | 4~6층 | 3 | 106,009,190 | 263,360,810 | – | 369,370,000 | 10,000,000 | 26,937,000 | 55,405,500 | 55,405,500 | 36,937,000 | 36,937,000 | 36,937,000 | 110,811,000 |
| | | | 3층 | 1 | 103,822,250 | 257,927,750 | – | 361,750,000 | 10,000,000 | 26,175,000 | 54,262,500 | 54,262,500 | 36,175,000 | 36,175,000 | 36,175,000 | 108,525,000 |
| | | | 2층 | 1 | 102,731,650 | 255,218,350 | – | 357,950,000 | 10,000,000 | 25,795,000 | 53,692,500 | 53,692,500 | 35,795,000 | 35,795,000 | 35,795,000 | 107,385,000 |
| | 49 | 105(3,4호)<br>106(4,5호) | 10층 이상 | 19 | 108,787,350 | 270,262,650 | – | 379,050,000 | 10,000,000 | 27,905,000 | 56,857,500 | 56,857,500 | 37,905,000 | 37,905,000 | 37,905,000 | 113,715,000 |
| | | | 7~9층 | 12 | 106,634,850 | 264,915,150 | – | 371,550,000 | 10,000,000 | 27,155,000 | 55,732,500 | 55,732,500 | 37,155,000 | 37,155,000 | 37,155,000 | 111,465,000 |
| | | | 4~6층 | 12 | 104,479,480 | 259,560,520 | – | 364,040,000 | 10,000,000 | 26,404,000 | 54,606,000 | 54,606,000 | 36,404,000 | 36,404,000 | 36,404,000 | 109,212,000 |
| | | | 3층 | 4 | 102,326,980 | 254,213,020 | – | 356,540,000 | 10,000,000 | 25,654,000 | 53,481,000 | 53,481,000 | 35,654,000 | 35,654,000 | 35,654,000 | 106,962,000 |
| | | | 2층 | 2 | 101,247,860 | 251,532,140 | – | 352,780,000 | 10,000,000 | 25,278,000 | 52,917,000 | 52,917,000 | 35,278,000 | 35,278,000 | 35,278,000 | 105,834,000 |
| 84.8802D | 15 | 103(5호) | 10층 이상 | 8 | 110,833,660 | 275,346,340 | – | 386,180,000 | 10,000,000 | 28,618,000 | 57,927,000 | 57,927,000 | 38,618,000 | 38,618,000 | 38,618,000 | 115,854,000 |
| | | | 7~9층 | 3 | 108,638,110 | 269,891,890 | – | 378,530,000 | 10,000,000 | 27,853,000 | 56,779,500 | 56,779,500 | 37,853,000 | 37,853,000 | 37,853,000 | 113,559,000 |
| | | | 4~6층 | 3 | 106,442,560 | 264,437,440 | – | 370,880,000 | 10,000,000 | 27,088,000 | 55,632,000 | 55,632,000 | 37,088,000 | 37,088,000 | 37,088,000 | 111,264,000 |
| | | | 3층 | 1 | 104,249,880 | 258,990,120 | – | 363,240,000 | 10,000,000 | 26,324,000 | 54,486,000 | 54,486,000 | 36,324,000 | 36,324,000 | 36,324,000 | 108,972,000 |
| 84.7662E | 16 | 101(2호) | 10층 이상 | 8 | 113,870,120 | 282,889,880 | – | 396,760,000 | 10,000,000 | 29,676,000 | 59,514,000 | 59,514,000 | 39,676,000 | 39,676,000 | 39,676,000 | 119,028,000 |
| | | | 7~9층 | 3 | 111,614,300 | 277,285,700 | – | 388,900,000 | 10,000,000 | 28,890,000 | 58,335,000 | 58,335,000 | 38,890,000 | 38,890,000 | 38,890,000 | 116,670,000 |
| | | | 4~6층 | 3 | 109,358,480 | 271,681,520 | – | 381,040,000 | 10,000,000 | 28,104,000 | 57,156,000 | 57,156,000 | 38,104,000 | 38,104,000 | 38,104,000 | 114,312,000 |
| | | | 3층 | 1 | 107,105,530 | 266,084,470 | – | 373,190,000 | 10,000,000 | 27,319,000 | 55,978,500 | 55,978,500 | 37,319,000 | 37,319,000 | 37,319,000 | 111,957,000 |
| | | | 2층 | 1 | 105,977,620 | 263,282,380 | – | 369,260,000 | 10,000,000 | 26,926,000 | 55,389,000 | 55,389,000 | 36,926,000 | 36,926,000 | 36,926,000 | 110,778,000 |
| 99.3324 | 33 | 102(3호)<br>103(4호)<br>104(3호) | 10층 이상 | 10 | 125,743,667 | 312,387,576 | 31,238,757 | 469,370,000 | 10,000,000 | 36,937,000 | 70,405,500 | 70,405,500 | 46,937,000 | 46,937,000 | 46,937,000 | 140,811,000 |
| | | | 7~9층 | 8 | 123,252,208 | 306,197,993 | 30,619,799 | 460,070,000 | 10,000,000 | 36,007,000 | 69,010,500 | 69,010,500 | 46,007,000 | 46,007,000 | 46,007,000 | 138,021,000 |
| | | | 4~6층 | 9 | 120,763,428 | 300,015,066 | 30,001,506 | 450,780,000 | 10,000,000 | 35,078,000 | 67,617,000 | 67,617,000 | 45,078,000 | 45,078,000 | 45,078,000 | 135,234,000 |
| | | | 3층 | 3 | 118,271,969 | 293,825,483 | 29,382,548 | 441,480,000 | 10,000,000 | 34,148,000 | 66,222,000 | 66,222,000 | 44,148,000 | 44,148,000 | 44,148,000 | 132,444,000 |
| | | | 2층 | 3 | 117,026,239 | 290,730,692 | 29,073,069 | 436,830,000 | 10,000,000 | 33,683,000 | 65,524,500 | 65,524,500 | 43,683,000 | 43,683,000 | 43,683,000 | 131,049,000 |

- 주택형 표시안내

| 공고 및 청약시 주택형(㎡) | 25.1332 | 40.2595 | 59.4194 | 84.4994A | 84.8014B | 84.7338C | 84.8802D | 84.7662E | 99.3324 |
|---|---|---|---|---|---|---|---|---|---|
| 약식표기 | 25 | 40 | 59 | 84A | 84B | 84C | 84D | 84E | 99 |

- 공통유의사항

· 2009.04.0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 · 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필로티,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예정)

| 구분 | 적용여부 |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등 |
|---|---|---|
| 고효율 기자재 | ○ | ·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펌프,전동기)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 | · 거실,침실,주방 각 1개소 |
| 일괄소등스위치 | ○ | · 세대 1개소 |
| 고효율 조명기구 | ○ | · 세대 및 공용부위내 |
|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 ○ | · 단지 내 공용화장실 |
| 실별온도조절장치 | ○ | · 단위세대 각 실별 설치 |
| 절수 설비 | ○ | · 세대내설치수전류는수도법제15조,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

- 「주택법」제21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장암의 가치에
더샵의 믿음을 더하다
장암 더샵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원)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82017-101-0009000 | 124,320,322,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①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
  ③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④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함.
  14. 보증채권자가 제8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 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시행사) | 시공회사 |
|---|---|---|
| 상 호 | 장암생활권 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포스코건설 |
| 법인등록번호 | 280271-0003194 | 174611-0002979 |

- 홈페이지 주소: www.thesharp.co.kr/janga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80
- 분양문의 : 1522-4334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posco 포스코건설

The Sharp 장암 더샵

1522-4334

시행 장암생활권 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posco 포스코건설